

5 - 35	발주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재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		
질의 일자	2018-02	회신 방법	국민신문고 민원
질의 내용			
○ 전기공사의 재하도급이나 재재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한지 여부			
회신 내용			
○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재하도급은 금지되나, 같은 조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전기기자재를 제작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. ○ 따라서 발주자(가)가 수급인(나)에게 전기공사를 도급을 주는 경우 수급인(나)은 일부분에 한하여 하수급인(다)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으며, 전기공사 전체를 하도급 줄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			